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38호의2서식] <개정 2024. 4. 9.>

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(kreach.me.go.kr)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자료보호 해지 요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

신청인 (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또는 위탁한 자 포함)	상호(명칭)		사업자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
	성명(대표자)		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	(전자우편:)
	소재지(사업장)	(전화번호:) (팩스번호:)		
화학물질명 (총칭명, CAS No.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)				
관리번호				

신청사항		
	자료 보호 해지 신청 요지 및 이유	
	자료 보호 목록	
	해지 전	해지 후

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4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 보호의 해지를 요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국립환경과학원장, 화학물질안전원장 · 유역(지방)환경청장 ·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

첨부서류	자료보호 수리결과통지서	수수료 없음

작성방법

관리번호란은 자료보호 수리결과통지서에 기재된 관리번호를 적습니다.

처리절차

신청인	처리기관
	국립환경과학원, 화학물질안전원, 유역(지방)환경청, 한국환경공단

신청서 작성	⇒	접수	⇒	검토	⇒	결재	⇒	통지
신청인		처리기관		처리기관		처리기관		신청인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